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 . . (제 회)	
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○○○ (국토교통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, 그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귀속되는 공공시설의 인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법 제65조제10항이 신설('26.06.16.)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을 시행령에서 규정하려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가. 공공시설의 무상귀속 기준 등(안 제61조의2 신설)

- 1) 국·공유재산의 대장에 공공용재산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또는 국·공유재산의 대장에 일반재산으로 등재된 것 중에서 공공시설로 이용 중인 경우에 무상 귀속 또는 양도할 수 있도록 규정
- 2) 개발행위로 인하여 더 이상 종래의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해 무상 귀속 또는 양도할 수 있도록 규정
- 3)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 설치하는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무상 귀속 또는 양도할 수 있도록 규정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
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장제1절에 제6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61조의2(공공시설의 무상귀속 인정기준 등) ① 법 제6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거나 양도하는 공공시설은 법 제2조제13호 또는 개별 법률에 따른 공공시설로서 「국유재산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유재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.

1. 개발행위허가 시점에 「국유재산법」 제66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대장 또는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44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대장(이하 이 조에서 “국·공유재산 대장”이라 한다)에 행정재산(공공용재산으로 한정한다)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
2. 개발행위허가 시점에 국·공유재산 대장에 일반재산으로 등재되어 있으면서 사실상 공공시설로 이용되고 있는 경우(다만,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)
 - 가. 「국유재산법」 제40조 또는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11조에 따라 관리청이 용도 폐지한 경우

나. 관계 법령에 따라 관리청을 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
중의 보편적 이용에 제공되지 아니하는 경우

② 제1항의 공공시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서 해당 개발행위로 인하여 더 이상 종래의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(종래의 공공시설 부지에 새로운 공공시설이 설치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 한해 무상으로 귀속되거나 양도할 수 있다.

③ 제1항의 공공시설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 설치하는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귀속되거나 양도할 수 있다.

④ 법 제6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도 적용된다.

1. 새로 설치하는 공공시설의 관리청과 종래 공공시설의 관리청이 다른 경우
2. 개발행위허가를 하는 행정청과 종래 공공시설의 관리청이 다른 경우
3. 새로 설치하는 공공시설과 종래 공공시설의 용도가 다른 경우

부 칙

이 영은 2026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61조의2(공공시설의 무상귀속 인정기준 등) ① 법 제6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거나 양도하는 공공시설은 법 제2조제13호 또는 개별 법률에 따른 공공시설로서 「국유재산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유재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.</u> <u>1. 개발행위허가 시점에 「국유재산법」 제66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대장 또는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44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대장(이하 이 조에서 “국·공유재산 대장”이라 한다)에 행정재산(공공용재산으로 한정한다)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</u> <u>2. 개발행위허가 시점에 국·공유재산 대장에 일반재산으로 등재되어 있으면서 사실상 공</u>

공시설로 이용되고 있는 경우
(다만, 다음 각 목의 어느 하
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
다)

가. 「국유재산법」 제40조
또는 「공유재산 및 물품
관리법」 제11조에 따라
관리청이 용도 폐지한 경
우

나. 관계 법령에 따라 관리청
을 정하고 있지 아니하는
것으로서 다중의 보편적
이용에 제공되지 아니하는
경우

② 제1항의 공공시설은 국가 또
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을 적
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서 해당
개발행위로 인하여 더 이상 종
래의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하는
경우(종래의 공공시설 부지에
새로운 공공시설이 설치되는 경
우를 포함한다)에 한해 무상으
로 귀속되거나 양도할 수 있다.

③ 제1항의 공공시설은 개발행
위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 설치
하는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

당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귀속
되거나 양도할 수 있다.

④ 법 제65조제1항 및 제2항의
규정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도
적용된다.

1. 새로 설치하는 공공시설의
관리청과 종래 공공시설의 관
리청이 다른 경우

2. 개발행위허가를 하는 행정청
과 종래 공공시설의 관리청이
다른 경우

3. 새로 설치하는 공공시설과
종래 공공시설의 용도가 다른
경우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국토교통부 도시활력지원과	
연 락 처	(044) 201 - 3722